

신규농업인 영농기술 향상지원을 위한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계획

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(귀농·귀촌)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(체험 등)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,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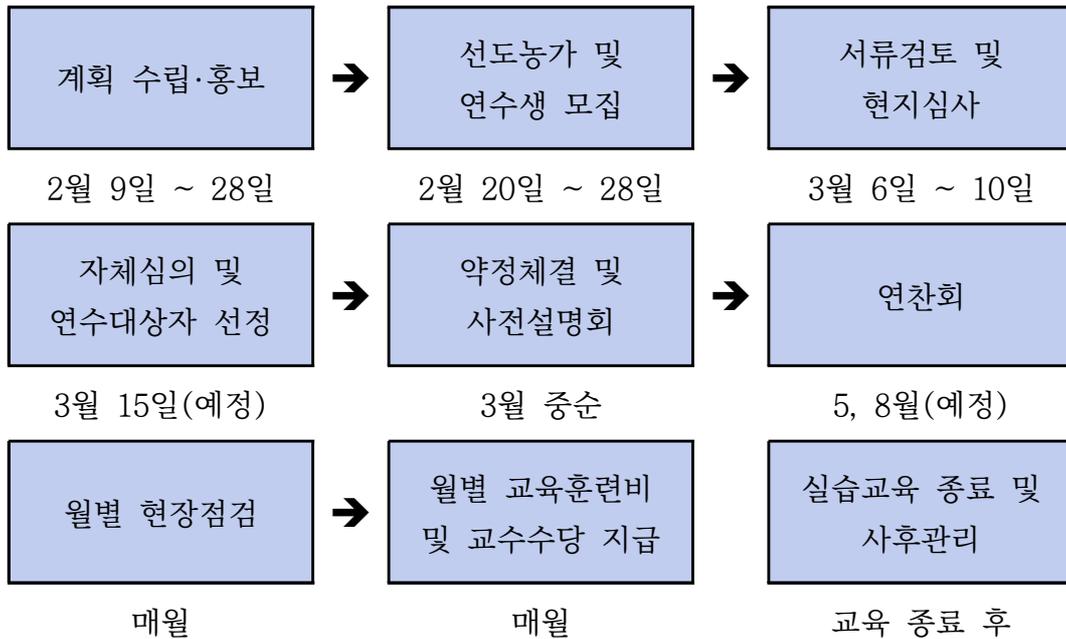
1 운영방향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(청년)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 또는 선도 귀농인)으로부터 영농 기술 습득, 정착과정 상담, 창업과정 등에 대한 연수 진행
- 영농 초기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,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
2 운영개요

- 사업기간: 2023년 3월 ~ 11월
- 사업량: 3팀 6명(선도농가 3명, 연수생 3명) * 연수생만 교육수료처리
- 사업비: 18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 - 1,200천원/월(160시간 기준) × 3팀 × 5개월 = 18,000천원
 - 월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금액 별도 산정·지급
- ※ 전체 기간 및 월별 연수시간은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절
- 사업내용: 선도농가(멘토)-연수생(멘티)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하여 연수생 수요작목 현장실습

3 세부일정



* 실습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홍보 및 접수

- 홍보기간: 2023. 2. 13.(월) ~ 2. 28.(화)
 - 마을 단위 교육 홍보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
 - 언론(신문 등)을 통한 적극 홍보
- 신청기간: 2023. 2. 20.(월) ~ 2. 28.(화)
- 신청방법: 직접 방문(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)
-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

【연수생】 *아래 5가지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

자격 조건	①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 ※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②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③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---------	---

	<p>④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</p> <p>⑤ 예비 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,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</p>
제출 서류	<p>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3 서식)</p> <p>※ 약정 이후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붙임 4 서식) 입력</p> <p>② 보안서약서(붙임 9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</p>

【선도농가】

자격 조건	<p>○ 농업기술원장(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)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</p> <p>1)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)</p> <p>2)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)</p> <p>※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</p>
제출 서류	<p>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(붙임 5 서식)</p> <p>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(붙임 6 서식)</p> <p>※ 운영계획서: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</p> <p>※ 약정 이후 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(붙임 7) 입력</p> <p>③ 보안서약서(붙임 9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10 서식)</p>

5

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

【대상자선정】

-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
-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음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(붙임 12 서식)을 통해 최종 선정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※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-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,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

【약정체결】

-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
-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
- 약정체결은 3~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
-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

<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 >

- ★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★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, 이 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

6

운영방법

- (필수)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 - ※ 단순노동(작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
- (선택)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자가영농실습 등
-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: 3~7개월, 월 160시간
 - ※ 자가영농 실습인정(일 4시간, 월 80시간 이내):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
 - ※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도 병행되어야 함 ex. 자가영농(4시간) + 선도농가포장(4시간)
- 주작목 + 부작목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
-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
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(3명 이상 연수 불가)
-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(연수기간 중복불가)
- 현장실습보고서(붙임 8)를 월 1회 e-HRD 시스템에 등록
 - ※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IT 취약계층일 경우 수기로 작성 및 관리

7

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

【교육훈련비】

- 지급대상: 연수생
- 지원금액: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
- 지원조건: 매월 10일(1일 8시간 한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

훈련비를 지원하며,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
※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

※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 : 4만원(교통비, 식비 포함)

- 신청방법: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(사본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(붙임 14 서식)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※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 제출
- 지급시기 및 방법: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※ 출석확인은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또는 출근부(서류)를 통해 확인

【교수수당】

- 지급대상: 선도농가
- 지원금액: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(3~7개월) 지급
※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
- 지원조건: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※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
- 신청방법: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(붙임 18 서식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(붙임 17 서식)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
※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 제출
※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
- 지급시기 및 방법: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계좌에 입금

8

기대효과

- 연수 기회 지원으로 영농기술 전파 및 기술센터 또는 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농촌지역 조기적응에 기여

【참고서식목록】

- (붙임 1) 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- (붙임 2) 연수생 선정기준(안)
- (붙임 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[연수생용](#)
- (붙임 4)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 입력) [연수생용](#)
- (붙임 5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[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6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[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7)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 [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8) 현장실습보고서(시스템 입력) [연수생/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9) 보안서약서 [연수생/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10)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[연수생/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11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
- (붙임 12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- (붙임 13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
- (붙임 14)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 [연수생용](#)
- (붙임 15) 연수생 출근부 [연수생용](#)
- (붙임 16)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[연수생용](#)
- (붙임 17)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[선도농가용](#)
- (붙임 18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 [선도농가용](#)

[붙임 1]

선도농가 선정기준(안)

평가항목	배점	득점	비고
<p>○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* 고용부 농산업인턴제, 농식품부 WPL 등 -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-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*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시설 등 - 실습포장,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, 교재 등 구비여부 	30		
<p>○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-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-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	40		
<p>○ 기타여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기업,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- 작목반,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-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-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(시스템 활용 등) - 여성농업인 여부 	30		
합 계	100		
종합의견			

연수생 선정기준(안)

구분	평가항목	평가 및 배점기준	점수
계	100점		
신청자 자격 (4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자 연령(10) ○ 본인 포함 가족수(10) ○ 귀농후 농촌거주기간(10) ○ 2023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(5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 30세 이하(10), 31~40세(7), 41~50세(5), 51~60세(3), 61세 이상(1) ○ 4명 이상(10), 3명(7), 2명(5), 1명(3) ○ 3년이상(10), 1~2년(7), 1년 미만(5) ○ 신청자(5), 미신청자(0) ○ 여성 또는 부부참여(5), 그 외(0) 	() () () ()
		※ 증빙서류: 주민등록 관련자료(주소이력 포함)	
귀농교육 (15점)	○ 귀농교육 이수시간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시간 이상(15), 71~99시간(10), 51~70시간(5), 21~50시간(3), 20시간 이하(1) *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% 인정 	()
		※ 증빙서류: 교육수료증 등	
사업규모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(5) ○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(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이상(5) 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미만(3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이상(5)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미만(3) *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	() ()
		※ 증빙서류: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	
사업계획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 수립(10) ○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(10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	() ()
		※ 증빙서류: 사업계획서(시스템활용계획 등)	
기타여건 (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(10) ○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(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○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 	() ()
		※ 증빙서류: 자율양식	

[붙임 3]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
신청자	(성명)	(주민등록번호)	-
①연 령(만)		②(이주 전) 거주지	예) 경기 수원
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	예)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('19)		
현 주소지			
연 락 처		이메일 주소	
④연수희망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
⑤연수희망지역	(최우선 지역)	(우선 지역)	(차선 지역)
⑥연수희망기간			
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			
⑧만40세 미만의 경우	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
⑨기타 특이사항			
⑩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	(직위)	성명 (인)

본인은 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3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연 령(만):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
 - ② 이주 이전 거주지: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
 -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: 우선 순위 선정시, 활용하고 해당 센터는 필요 시 귀농
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
 - ④ 연수희망작목: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 - ⑤ 연수희망지역: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
(희망 선도농가(농업법인) 기재 가능)
 - ⑥ 연수희망기간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
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 -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: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
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(별지 사용가능)
 -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3년도 「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
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
 - ⑨ 기타 특이사항: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 - ⑩ 추천기관: 해당 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
수신청서 사전 확인·보완 후 추천 가능
- 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4]

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입력)

연수개요

센터명	연수생		선도농가 성명(예상)	현장실습기간 (희망기간)	희망 연수작목
	성명	귀농연월			
		2022. 3		4.1 ~ 9.30	

현장실습교육 동기(목적)

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(3가지 이상)

【농업기술, 사업화기술, 사업마인드, 관계강화 등】

-
-
-
-

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

[붙임 5]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
① 신청자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주민등록번호) -
주사업장 주소	
연 락 처	이메일 주소
② 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③ 연수가능지역	
④ 연수가능기간	
⑤ 자기소개	1. 주작목의 영농규모 2. 전체 영농규모 3. 영농경력(년)
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	
⑦ 기타 특이사항	
⑧ 추천기관(단체) 확인란	(소속) (직위) 성명 (인) 적합여부

본인은 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지침에 의거 '현장실습교육장'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3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별첨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③ 연수가능지역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
- ④ 연수가능기간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2~12월)
- ⑤ 자기소개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,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영농규모, 영농경력,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(필요 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)
-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: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,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
- ⑦ 기타 특이사항: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- ⑧ 확인란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, 영농기술 수준,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

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6]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
①신청자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가능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③연수가능기간	
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	
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	
⑥월별 실습사항	
⑦실습 기대효과	
⑧추천기관 확인란	(소속) (직위) 성명 (인) 적합여부

본인은 2023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’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신청일 : 2023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

- ① 신청자: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가능작목: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③ 연수가능기간: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-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: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
-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: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
- ⑥ 월별 실습사항: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사항을 기재
- ⑦ 실습 기대효과: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
- ⑧ 확인란: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·보완 등 조치 필요

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7]

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(시스템 입력)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기타 사항
개 요	시·군명	선도농가		연수생 성명 (예상)	연수희망기간		연수 지원 작목	
		성명	영농연월		시작일	종료일		
핵심 생산기술								
경영·유통 및 창업								
농촌적응 노하우								
견학·지인 소개								
기대효과								

[붙임 8]

현장실습 보고서(시스템 입력)

○ 사업개요

구분	이름	작목	계약기간	월 근무일수	규모(m ³)
귀농연수생					
선도농업인					

○ 경영계획, 실천, 점검(To Do List)

* 연수생 작성

번호	경영계획	경영실천(창업접목)
1		
2		
3		
4		
5		

○ 향후 계획 및 시사점

선도농업인	연수생

○ 농업경영 코칭

* 센터 담당자 작성

	담당자 확인 (서명)
2023년 월 일	

[붙임 9]

보안서약서

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,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2.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
3.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,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4.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,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서약자 : (인)

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[붙임 10]

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○ 성 명:

○ 주민등록번호:

○ 주 소:

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성명 (인)

○○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(표준)약정서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, ()소장을 “갑”이라 하고, 선도농가 ()를 “을”이라 하며, 연수생 ()을 “병”이라 하며, “갑”·“을”·“병”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1. 약정기간: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(개월)

2. 약정내용

제1조(총칙) “을”은 “병”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, “병”은 “을”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.

제2조(약정의 해약) ①“갑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.
2.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.
3.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“갑”은 “을”과 “병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조(연수생과 선도농가) ①“병”은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“을”은 “병”이 당초 “을”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“을”과 “병”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“갑”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“을”과 “병”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“을”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“병”은 “을”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.

⑤“병”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“병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,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기타 사항은 “을”과 “병”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지침 및 약정의 준수) ①“을”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②“병”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지침의 적용)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해석)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.

제7조(특약)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 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“갑”, “을”과 “병”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.

※ 특약사항 :

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“을”, “병”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“갑”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“갑” 농업기술센터소장 : 인 또는 서명

“을” 성명 : 인 또는 서명

“병” 성명 : 인 또는 서명

<붙임> :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.

[붙임 13]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

①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총 연수기간	
④보고연수기간	
⑤ 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⑦종합검토의견	

2023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점검자 : 소속 직위 성명 (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

- ① 선도농가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
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 - ② 연수생: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
 - ③ 연수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 - ④ 보고연수기간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(결과
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 - ⑤ 교육의 주요 내용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 - ⑥ 기타 특이사항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
- *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외출계, 출근부 등)
- ⑦ 종합검토의견: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(할) 사항을 기입

[붙임 14]

()월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

신청인	성명		주민 등록번호	-	
	주소				
	은행계좌	계좌번호 : (은행 지점) (예금주 :)			
	총연수기간	~ (개월)	근무일수	(일)	
			근무시간	(시간)	
연수작목	(주작목)	(부작목)			

교육훈련 내용	
------------	--

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 근무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연수생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- 【구비서류】 1. 연수약정서 사본(기 제출시 생략)
2. 출근부 사본
3. 통장 사본

* 연수생은 매월 시스템으로 보고 필수

[붙임 16]

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(연수생 작성)

(※ 해당 작업내용에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)

일 자	학습구분	확 인	
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약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작물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·선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	학습시간		학습내용
	※ 필요시 사진 첨부		
월 일	<input type="checkbox"/> 농약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초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작물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확·선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
	학습시간		학습내용
	※ 필요시 사진 첨부		

* 센터 여건에 맞게 경영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

[붙임 17]

()월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

사업장명		대표자	
------	--	-----	--

사업자 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
----------------------	--

소재지		연락처	() -
-----	--	-----	-------

지급희망 은행계좌	계좌번호 : (은행 지점) (예금주 :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교수수당 신청 대상 기간	. . . ~		교수수당 신청금액		(₩) 원
연수생 성명	주민등록번호	전체연수기간	근무일수	근무시간	청구금액
					원
					원
					원
					원

위와 같이 연수생에 대한 현장실습교육 연수시행에 따른 교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

2023년 월 일
선도농가 (서명 또는 인)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- 【구비서류】**
1. 연수약정서 1부 사본(기 제출시 생략)
 2. 연수 추진실적(결과)보고서(연수생별 작성)
* 시스템 보고서로 대체 가능
 3. 통장 사본

[붙임 18]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

①선도농가	(성명) (사업자등록번호) (생년월일)
②연수생	(성명) (생년월일)
③연수작목	(주작목) (부작목)
전체연수기간	
④보고연수기간	
⑤교육의 주요 내용	
⑥기타 특이사항	

2023년도 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’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*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,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
(단,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)

2023년 월 일

보고자(선도농가) : (인)

○○○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(결과) 보고서 작성요령

- ① 선도농가: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,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
- ② 연수생: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
- ③ 연수작목: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④ 보고연수기간: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
(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)
- ⑤ 교육의 주요 내용: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
- ⑥ 기타 특이사항: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